

束草市稅減免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4. 12. 28.

내 무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 12월 6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94. 12. 22)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김종옥)

가.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3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하여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단체·장애인 소유 자동차·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교육시설·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지정문화재·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등 · 임대주택 · 농외소득원 개발 ·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신타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 사권제한토지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안 제17조, 제1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에 대해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97.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타시도 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세무과장 김종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 조례안에 자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수정부분이 있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록이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도에서 19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시에서는 16개 조례안이 해당되고,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 외 2건은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고, 본 조례안은 수정부분이 없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생략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공용지 편입 사권제한토지중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감면, 제한만 시켜놓고 쓰지않는 토지는 50% 감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50% 감면하는지?	○ 공공시설용지는 100% 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 지적고시된 토지, 철도용지로 된 토지는 50% 감면함.

5. 討論 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 없 음

7. 審査結果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세감면조례안 1부. 끝.

속초시세감면조례안

의안 번호	315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출자 : 속초시장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의 적용사항을 1년, 3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하여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면제
 -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면제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세 면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
2. 사회교육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면제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면제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경감
 -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종합토지세 경감
3.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

속초시세감면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

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및 동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받은자및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중소기업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 제13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제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 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질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질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급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본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동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20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속초시 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2. 속초시 낚형승용차등차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속초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별 표]

상이등급분류표

(제2조제2항 관련)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 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 에만 그 대상이 된다.

[별 표]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감면내용

(제14조와 관련)

면제대상	특별시 (직할시) 세	도 세	구 세	시(군)세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차전용 토지 및 그 부대 시설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종합토지세는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서식]

속초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 면 내 용	세 목	년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합 계				
감 면 사 유 속초시세 감면 조례 제○○조					
속초시 감면 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